

보도해명자료

(’16.5.2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공산품 국가표준 심의 업무

39개 중 14개 산업부→7개 부처로 이관”(’16.5.27. 국민일보)

1. 기사내용

- ☐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는 당시 공산품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인체 유독성을 검증하기도 전에 국가표준(KS) 인증까지 받아 판매됐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국가표준 지정한 사실이 없으며,
- ☐ 또한,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KS인증대상 제품으로 지정한 경우도 없으므로, ‘가습기살균제가 국가표준(KS) 인증까지 받아 판매됐다’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조정과 이석우 과장 (043-870-5380)
이용로 연구관 (043-870-5382)